

거창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 번호 | 2015~42 |
|----------|---------|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발의일자 | 2015. 6. 19. |
| 발 의 자 | 박희순, 변상원, 김종두, 형남현, 권재경, 김향란 의원 |

1. 제안이유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(안 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사항과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3조 및 안제4조)
- 다. 어린이집 안전 지도·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. (안 제5조)
- 라. 안전 모니터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 6조)
- 마.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7조)
- 바.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
- 사. 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조, 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3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, 주민생활지원실
- 라. 기타사항
 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- 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 : 2015. 6. 11. ~ 6. 18.
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- (4) 비용추계서 :
 - (5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어린이집”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.
2. “영유아”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3. “보육교직원”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·점검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)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관리, 급식관리, 위생관리, 차량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안전 지도·점검 계획 수립 등) ①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·점검계획(이하 “지도·점검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도·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지도·점검 계획의 방향
2. 소방훈련 등 안전관리 지도·점검에 관한 사항
3.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·점검에 관한 사항
4.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·점검에 관한 사항
5. 지도·점검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안전 모니터링제 운영) ① 군수는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, 위생관리,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7조(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)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8조(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)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의3 및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

제9조(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설치) 군수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제10조(안전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) 군수는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시설 개선 및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